



3. 세계선교사 관리규정 <개정>

제 1 장 총 칙

【2056】 제1조(목적)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세계선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,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선교사 발굴, 인선, 훈련, 인준, 파송, 후원, 복지, 관리 등과 관련된 제반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.

【2057】 제2조 선교사의 모든 행정 및 선교사 관리는 선교국에서 관장한다.

제 2 장 선교사의 정의, 구분, 자격

【2058】 제3조(선교사의 정의)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선교사훈련과정을 필한 후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고 국내외 선교사역을 위해 파송받아 현지인과 국외 한인(교포) 및 국내 이주민 사역을 수행하는 자를 선교사라 한다. <개정>

【2059】 제4조(선교사의 구분과 자격) 모든 선교사는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세계 선교에 사명감이 투철한 민법, 형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.

① 교역자선교사(서리 파송자 포함)

1. 감리교회 인정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





498 제12편 각종 정관, 규정 및 규칙

2.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<개정>
3.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
4.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
- ② 평신도선교사
 1.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
 2.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
 3.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 평신도
 4.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
- ③ 협력선교사
 1.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및 평신도로 제4조 제1항, 제2항의 자격을 벗어나지만 선교사로 인정받은 이. 다만, 교역자 협력선교사는 진급은 인정하되 선교지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.
 2. 선교사 훈련과정은 선교국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④ 명예선교사
 1.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또는 평신도로서 은퇴 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선교활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
 2. 선교비는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며, 해당지역 선교사회 혹은 선교국에서 추천된 자
 3.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. 교육과정은 선교국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⑤ 전문인선교사
 1.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의 평신도로서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전문 직종에서 종사한 자
 2. 본부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또는 전문인 선교훈련 단체





의 훈련과정을 필하고 집중훈련을 이수한 자

3. 해당 분야의 수상경력과 시설을 갖춘 자

⑥ 현지인 협동선교사 : 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 선교사가 추천하는
현지인 협력 사역자로서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정을 필
한 자

⑦ 단기선교사

1.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정회원 교역자 및 평신도로 3년 이하
의 사역 기간을 약정하고 팀사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
2.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

⑧ 국내 이주민 선교사 <신설>

1. 본부 파송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8년 이상 사역한 자
2. 국내 이주외국인을 위해 목회와 선교기관에서 선교활동을 수
행할 자
3. 선교사자격인준심사에 재심의로 통과된 자

⑨ 원로선교사

1. 선교지에서 무흠하게 20년 이상을 사역하고 정년을 맞아 은퇴
한 자
2. 해당지역 선교사회와 후원교회의 추천을 받은 자

⑩ 기타 : 이외 특별한 경우에는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
필한 자로서 본부 선교국의 특별 심의를 거친 후 선교사 자격인
준심사에서 통과된 자





제 3 장 선발과 파송

【2060】 제5조(선교사 선발 및 인준)

- ① 선교사는 소속교회나 선교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지원자를 추천 받아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선교사 자격인준심사를 통하여 선발하고 그 자격을 인준한다.
- ② 선교국은 인준자 명단을 「기독교세계」와 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.
- ③ 선교사로 선발된 이는 공식 파송 시까지 ‘수련선교사’로 호칭하고 소속교회 또는 선교지에서 1년간의 선교실습을 한 후 파송되며 이 기간 동안 자원봉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.

【2061】 제6조(선교사 임명과 파송)

- ① 파송예배 :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준 받은 자는 선교국과 소속연회 공동주관으로 파송예배를 드리고 파송장은 감독회장과 소속연회 감독의 공동명의로 발급한다.
- ② 파송시기
 1. 수련선교사는 목사안수 후 3개월 이내에 파송 받아 선교지로 부임해야 한다.
 2. 정회원 교역자, 평신도, 협력, 전문인, 명예, 현지인 협동, 단기 선교사의 경우는 인준 후 3개월 내에 파송 받아 선교지로 부임하여야 한다.
- ③ 재파송 : 사직 후 4년 이내에 재파송되는 선교사는 인준과정만 필하면 되나 4년 이상 된 자는 집중훈련과 인준과정을 필하여야 한다. <개정>





【2062】 제7조(선교사 파송임기)

- ① 파송선교사의 기본임기는 4년이며 선교사는 선교국과 소속교회,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선교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. 다만,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를 변경할 시에는 재계약으로 인정한다.
- ② 3월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선교사는 당해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. 다만, 은퇴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로선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
- ③ 초임선교사는 선교지에 부임한 지 1년 이내인 자를 말하며, 각 해당지역 선교사회는 초임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두어 실시하고 보고서를 선교국에 제출하도록 한다. 초임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.

제 4 장 재정적 후원과 복지

【2063】 제8조(선교사 재정지원)

- ① 선교비는 파송선교사의 소속교회 또는 선교단체, 선교후원회, 개인의 특별헌금, 선교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지원한다.
- ② 선교비는 정기적인 생활비, 선교활동비, 각종 프로젝트별 특별선교지원금 등을 말한다. 정기적인 생활비에는 상여금(연 200%), 자녀교육비, 퇴직금(연 100%) 등을 포함하며 선교비는 그 외 항공료와 정착비(이사비용), 상해보험료(연 1회) 등이 포함





502 제12편 각종 정관, 규정 및 규칙

된다.

- ③ 선교비는 선교국이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교사와 후원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선교비 후원약정서와 후원증빙서류를 선교국에 제출토록 한다.
- ④ 선교비는 선교국을 통하여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선교후원자가 직접 송금코자 할 경우에는 선교국에 송금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선교국은 선교기금마련을 위해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재정후원자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

제 5 장 본 감리회와의 관계

【2064】 제9조(선교사와 본부와의 관계)

- ① 본부 선교국은 선교사와 소속교회,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후원교회, 연회, 현지 선교사회와 협력하며 선교사들을 관리 감독한다.
- ② 선교사는 선교보고서와 기타 선교사역과 관련된 행정서류를 필히 선교국에 제출하며 선교국은 이를 해당 연회에 송부토록 하고 선교사와 관련된 제 증명서를 발급한다.
- ③ 선교사는 연 2회 이상 선교국에 선교보고를 해야 하며 선교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

【2065】 제10조(선교사 복지)

- ① 선교국은 선교사의 복지를 위해 보험, 은급, 게스트하우스, 안식관, 퇴직금, 의료지원, 경조비에 대한 제도와 원칙을 연회와 감





리교세계선교협의회, 세계선교사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관리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.

- ② 선교국은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을 위해 선교사자녀장학재단과 적극 협력하여 후원자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 장학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.

【2066】 제11조(선교사회 관리와 운영) 선교국은 지역 및 국가별로 선교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자와 임원들을 세워 지원하고 관리한다. 선교사회는 세계선교사회, 권역별선교사회 그리고 나라별선교사회로 구분하고 각 선교사회의 조직과 운영,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.

제 6 장 선교 관리

【2067】 제12조(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)

- ① 선교국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.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.
- ② 선교지 이동
1. 선교사는 임기 중 선교지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이탈할 수 없다.
 2. 30일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중에 선교지를 벗어나 일시 귀국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소속교회 또는 후원교회 담임자의 동의서를 15일 전에 선교국에 제출하여 재가를 받은 후 이동한다. 다만, 같은 국가 내에서 사역지 변경은 해당 지역 선교사회와 파송교회 또는 후원





504 제12편 각종 정관, 규정 및 규칙

교회(단체)의 동의를 받은 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내용은 선교국에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선교지 이탈

1.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할 수 없다.
2. 해당지역 선교사회 대표는 선교사가 사역지를 이탈할 것을 확인한 경우, 선교국에 상황보고를 하여야 하며, 무단 이탈 시 선교국은 조사한 후 행정 처리하도록 한다.
3.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탈할 경우 선교국과 해당지역 선교사회, 파송교회 또는 후원교회(단체)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부당한 이탈을 한 경우 선교국은 이를 조사 처리하며,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.

④ 안식년

1. 안식년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4년을 지난 후에는 6개월, 6년 이상은 1년에 1회 이내로 한다. 다만, 기본 4년 후 선교사역을 종료하고자 할 시에는 안식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다.
2. 안식년을 위해 필요한 행정서류와 처리과정 등 상세한 것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.

⑤ 소속 이동

선교사가 소속 이동 시에는 해당 연회에 접수 처리된 소속이동 청원서 사본을 선교국에 제출하여 소속이동 행정처리를 하도록 한다.

⑥ 사직과 재파송

선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거나 재파송을 원할 경우 행정처리에 관한 내용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.





【2068】 제13조(현지인 목사안수와 신학교 관리)

- ① 현지인 목사안수 : 현지인 목사안수는 선교국 위원장과 선교국 총무 또는 선교국의 위임을 받은 이가 현지에 가서 집행한다.
- ② 신학교 관리를 위한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.

【2069】 제14조(선교사 재산 관리)

- ① 선교지에 있는 모든 재산은 선교국 산하에 두며 선교지 특성상 선교사가 관리토록 하나 선교사가 임의로 처분, 정리, 매각, 증여, 교환할 수 없다. 다만, 선교지 재산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소속교회,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의 협의하에 선교국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토록 한다. 불이행 시 선교국은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행정 처리방안을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소속교회와 연회, 후원단체에 통보하여 정리토록 한다.
- ② 선교사가 선교활동과 관련해 구입하는 모든 재산은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며 선교단체 또는 재단 명의로 구입하여야 한다.
- ③ 선교사는 재산등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선교사회와 선교국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 보관, 관리토록 한다.
- ④ 선교사의 임지이동(안식년, 귀국, 병가 등) 또는 변경 시에는 인수·인계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소속교회, 선교단체, 선교국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 보관, 관리토록 한다.

【2070】 제15조(선교사 위기 관리)

- ① 선교국은 선교사의 위기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원한다. 위기관리정책과 대처 방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.





제 7 장 선교 현지교회와의 관계

【2071】 제16조(선교 현지교회와의 협력)

- ① 본 감리회는 필요한 경우 선교 현지교회와 선교협약을 맺는다.
선교협약은 감독회장 또는 감독회장의 위임을 받아 선교국 총무가 현지교회 대표와 맺는다.
- ② 선교협약이 맺어지지 아니한 지역이라도 선교사는 선교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부 칙

【2072】 제1조 본 규정은 입법회의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된다.

【2073】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선교국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입법회의에서 인준받는다.

【2074】 제3조 선교사 관리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은 선교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 (2015. 10. 30)

【2075】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7. 10. 27)

【2076】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4.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507

부 칙 (2019. 10. 30)

【2077】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 10. 27)

【2078】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4.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

1) 도서출판kmc

【2079】 제1조(도서출판kmc 설립) 감리회는 감리회의 기관지, 교재,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서출판kmc를 설립한다.

① 도서출판kmc는 감리회 산하에 두되, 「교리와 장정」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감리회 본부와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도서출판kmc가 출판하는 모든 도서와 제작 판매하는 상품의 판권과 지적소유권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갖는다.

【2080】 제2조(도서출판kmc의 운영) 도서출판kmc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도서출판kmc는 감리회 산하에 두되, 「교리와 장정」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하여 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

